

울산지방법원 2021. 10. 20 선고 2021가단545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9. 29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0,83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9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정석

별지